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5. 1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8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6.7.12.) 및 법제처 등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령 인용 조항 및 상위법령 중복 내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개정
(안 제33조, 안 제36조, 안 제91조)
 - 개정 전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
-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대상 신설(안 제18조의2)
 -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제기구 및 비영리민간단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 신설(안 제38조)

나.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조항 삭제(안 제16조)
-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2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하는 기업
- 관사의 용도를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 명확화(안 제48조)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내용 삭제(안 제72조)
- 물품관리관이 아닌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검사토록 상위법에 규정된 바, 위배의 소지가 있어 해당규정 삭제(안 제83조)
- 질의회신 등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하므로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해당조항 삭제(안 제95조)

다. 법령 인용 조항과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

-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회 생략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조)
 - 심의회 생략대상을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개정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조항 삭제
(안 제17조의2, 안 제91조의2)
- 인용 법령 정비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73조, 안 제84조, 안 제85조)

라.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2016.7.12.) 전에
매매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7조의2, 제33조, 제36조, 제9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
및 그 밖에 법령 인용 조항, 상위법령 중복 내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본 안건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12.19.)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둘째,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셋째, 법령 인용 조항 과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음.

넷째,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개정하였음.(안 제33조, 안 제36조, 안 제91조)
-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대상 신설함.(안 제18조의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12.19.) 개정은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 신설(안 제38조)

○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개정 권고 사항 반영은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조항 삭제함.(안 제16조)
-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안 제25조)

- 관사의 용도를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 명확화 함.(안 제48조)
 -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내용 삭제함.(안 제72조)
 - 물품관리관이 아닌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검사토록 상위법에 규정된 바, 위배의 소지가 있어 해당규정 삭제함.(안 제83조)
 - 현행 제95조(준용)이 불필요하여 삭제함.
- 법령 인용 조항과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사항은
-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회 생략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4조)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조항 삭제함.
(안 제17조의2, 안 제91조의2)
 - 인용 법령을 정비함.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제73조, 안 제84조, 안 제85조)
-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함.
- 종합의견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및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정이며, 그 밖에 법령 인용 조항 및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2016.7.12.>

7. 삭제 <2016.7.12.>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1.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11.>

1. 산업통상자원부나 그 밖의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관계 시·도의 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투자지원센터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외국인투자
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
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자원
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소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
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
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6.21.] 제7조제1항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
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6.21.] 제7조의2제1항

제2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12.29)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